

안전보건관리규정

<제정: 2023.05.02>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주)테크웰(이하 “회사”이라 한다)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쾌적한 근무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하고 생산 능력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회사의 전 임직원 및 사내도급사업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② 이 규정은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반대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관하여는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정한 기준에 따른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법 및 관계 법령, 취업규칙, 단체협약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가 1인 이상 발생한 재해, 3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인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
3.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측정계획을 수립하여 시료의 채취, 분석, 평가 하는 것을 말한다.
4.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규정을 말한다.
5.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상관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② 이 규정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이 규정에서 특별히 정하는 것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산업안전보건법」같은 법 시행령·같은 법 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안전보건업무의 우선) ① 회사의 모든 업무수행에 있어 사고방지를 위해 예산, 인력, 제도면에서 안전·보건업무를 우선으로 한다.
② 대표이사는 회사에 적합한 안전보건방침을 정하여야 하며, 이 방침에서는 안전보건에

관한 대표이사의 경영방침과 목표, 성과개선에 대한 의지가 분명히 제시되어야 하고 모든 구성원에 공표되어야 한다.

제5조(산업재해 예방책임) 회사와 근로자는 이 규정을 준수하고 산업재해 예방에 관하여 공동으로 책임을 지며, 구체적인 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의거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관리할 책임이 있다.
2. “관리감독자”는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당해 직무와 관련된 안전·보건상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할 책임이 있다.
3. “안전·보건관리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를 지도·조언하여 안전·보건활동을 원활히 수행하고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4. “근로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모든 기준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에 관한 제반 조치를 적극 따라야할 책임이 있다.

제5조의2(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수립) ① 회사는 동일한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의 일부를 도급을 주어 운영을 하는 경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근로자와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예방을 위한 재해예방계획을 별도로 수립·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 의한 도급사업 재해예방계획 수립 시 수급업체의 사업주를 참여시켜야 한다.
- ③ 회사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적격수급인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세부기준을 지침 등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5조의3(도급사업 안전보건체계) ① 회사는 제5조의2 도급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안전보건총괄책임자로 지정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직무와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2. 도급사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조치
 3. 수급업체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협의·조정
 4. 유해·위험 기계·기구의 방호장치 여부 확인
 5.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가 검사를 받고 사용하는지 여부의 확인

제5조의4(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① 회사는 동일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도급사업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2.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3.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4. 작업환경측정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대비한 경보의 운영과 수급인 및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한 경보운영 사항의 통보
 - 가. 작업 장소에서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 나. 작업 장소에서 화재가 발생하거나 토석 붕괴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 ② 회사는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장 안전보건관리 조직과 직무

제6조(안전보건관리조직) 회사는 안전보건관리조직을 “별표 1”과 같이 구성·운영한다.

제6조의2(인력확충) 회사는 안전관리대상 시설, 사업 및 안전 위험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안전 관련 인력을 확보하고 적재적소에 배치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의3(전문성 강화) 회사는 안전 분야 근로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는 상무이사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감독한다.

1. 회사의 산업재해 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에 관한 사항
3.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4. 작업환경의 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의 적격품 여부 확인에 관한 사항
7. 근로자의 위험 또는 건강 장애의 방지에 관한 사항
8.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근로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
10.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

제8조(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는 당해 업무와 소속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각 부서의 장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관리감독자가 직접 지휘·감독하는 기계, 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3. 당해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 조치
4. 당해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5. 안전·보건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6. 안전 목표와 방침 전달
7. 위험성평가에 관한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8. 위험성평가에 관한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제9조(안전관리자) ①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등과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의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3.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해당 사업장 안전교육계획의 수립 및 안전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6.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조사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7.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분석을 위한 조언·지도(안전분야로 한정한다)
8.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안전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9.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0. 그 밖에 안전에 관한 사항

② 대표이사가 안전관리자를 배치할 때에는 연장근로·야간근로 또는 휴일근로 등 해당사업장의 작업 형태를 고려해야 한다.

③ 대표이사는 안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외부전문가의 평가·지도를 받을 수 있다.

④ 안전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보건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⑤ 안전관리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4조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관리자”로, “법 제15조제1항”은 “제1항”으로 본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전문기관(이하 “안전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0조(보건관리자) ① 보건관리자는 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업무와 안전·보건관리규정 및 취업규칙에서 정한

업무

2.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 등 중 보건과 관련된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선정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3.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게시 또는 비치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4.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5. 산업보건직의 업무(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6. 해당 사업장 보건교육계획의 수립 및 보건교육 실시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
7. 근로자 보호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치에 해당하는 의료행위(보건관리자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 또는 간호사인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환자의 치료
 - 나. 응급처치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처치
 - 다. 부상·질병의 악화를 방지하기 위한 처치
 - 라. 건강진단 결과 발견된 질병자의 요양 지도 및 관리
 -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의료행위에 따르는 의약품의 투여
8. 작업장 내에서 사용되는 전체 환기장치 및 국소 배기장치 등에 관한 설비의 점검과 작업방법의 공학적 개선에 관한 보좌 및 지도·조언
9. 사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10.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분석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지도
11.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유지와 관리를 위한 지도·조언(보건분야로 한정한다)
12.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한 보건에 관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보좌 및 조언·지도(관계법령, 안전·보건관리규정, 취업규칙 중 보건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13.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유지
14. 그 밖에 작업관리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 ② 보건관리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안전관리자와 협력해야 한다.
 - ③ 대표이사는 보건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시설·장비·예산, 그 밖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해야한다.
 - ④ 보건관리자의 배치 및 평가 지도에 관하여는 법 시행령 제18조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자”는 “보건관리자”로, “안전관리”는 “보건관리”로 본다
 -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보건관리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안전보건 노사협의회)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의결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된 안전보건노사협의회를 설치·운영하며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회사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2안전근로협의체) ① 사업의 일부를 도급할 경우 사업장 안전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원·하청 노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근로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② 안전근로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다.

제11조의3안전보건 노사협의회) 안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근로자,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안전보건 노사협의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하며 “별표 2”의 기준에 따른다

제3장 안전보건교육

제12조(교육의 구분) 안전·보건교육은 교육대상에 따라 신규 채용시 교육, 작업 내용 변경시 교육, 정기교육, 관리감독자 교육, 특별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별표 3”의 기준에 따른다.

제13조(교육의 주관) ① 안전·보건교육은 관계법령이 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거나 자체적으로 실시한다.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실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2. 관리감독자
3.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4.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5. 산업보건의(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 의사)
6.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부서는 교육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3조의2물질안전보건교육)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대상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를 배치하는 경우
2. 새로운 대상 화학물질이 도입된 경우
3.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교육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또는 제품명)
2. 물리적 위험성 및 건강 유해성
3. 취급상의 주의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6.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경고표지를 이해하는 방법

제14조(교육관계 기록·보존) 회사는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한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한 교육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 교육일시 및 장소
2. 교육담당자
3. 교육과정 및 내용
4. 교육대상자 및 참석인원
5. 그 밖의 교육결과를 증명하기 위한 사항

제4장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계획

제15조(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의 수립)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매년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재가를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계획을 전 부서에 통보 및 게시하여 모든 근로자가 안전·보건관리업무의 진행사항을 알게 하여야 한다.

제15조의2(안전경영책임계획의 수립 및 실행) 매년 12월 말 회사의 사업·시설 및 직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다음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내용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을 따른다.

제15조의3(안전경영책임보고서 작성 및 공시) 회사는 매년 2월말까지 당해 연도 안전경영책임계획의 주요내용 및 전년도 안전경영책임계획에 대한 점검내용, 전년도 재해현황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안전경영책임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및 공시에 관한 세부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5장 안전관리

제16조(안전점검) ① 안전관리 주관부서,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안전보건관계자 및 주관부서는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 ② 안전점검내용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및 관련 법령에 정한 기준을 근거로 하여 실시한다.
- ③ 안전점검결과 제반 규정에 적합하지 않은 사항이 발견되는 경우, 해당부서에 개선을 요구하거나 자체적으로 개선 조치하여야 한다.
- ④ 안전관리 주관부서에서 개선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조치결과를 안전관리 주관부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 ⑤ 안전점검을 실시한 부서는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검사) ①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는 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계·기구·설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기계·기구·설비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검사기준에 맞도록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진단은 자율진단과 명령진단으로 구분하고, 근로자 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② 회사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하여 객관적 평가 등이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율진단을 할 수 있다.
③ 회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고용노동부 지방청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진단을 받아야 한다.

제19조(시설안전관리) ① 폭발성, 발화성, 인화성 등 위험물의 보관은 안전담당자 또는 위험물 취급책임자의 지시를 받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한다.
② 고압가스저장소, 고압용기저장소, 변전실, 유류저장소, 기타 유해·위험한 장소에서는 화기물질의 휴대를 금지하고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한다.
③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기계, 전기, 설비시설, 고압가스, 인화물, 위험물, 기타 위험장소에 필요한 방호장치 및 위험을 알리는 안전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20조(안전조치) ①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1. 기계·기구, 그 밖의 설비에 의한 위험
 - 2. 폭발성, 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 등에 의한 위험
 - 3. 전기, 열, 그 밖의 에너지에 의한 위험
- ② 관리감독자는 굴착, 채석, 하역, 벌목, 운송, 조작, 운반, 해체, 중량물 취급, 그 밖의 작업을 할 때 불량한 작업방법 등에 의한 위험으로부터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관리감독자는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
2. 토사·구축물 등이 붕괴할 우려가 있는 장소
3.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있는 장소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장소

제21조(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① 모든 근로자는 동력(動力)으로 작동하는 유해·위험 기계·기구는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별표 4]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근로자는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1항의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설치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방호조치와 관련되는 장치를 상시적으로 점검하고 정비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와 근로자는 제1항에 따른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해당 기계·기구의 관리감독자 허가를 받아 해체할 것
2.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시킬 것
3.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지체 없이 해당 기계·기구의 관리감독자에게 보고할 것

⑤ 해당 기계·기구의 관리감독자는 제4항 3호에 따른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즉시 수리, 보수 및 작업 중지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전기설비 안전관리) ① 관리감독자는「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시]에 적합하도록 전기설비를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관리감독자는「안전보건규칙」[고용노동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로 인한 위험 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2조의2(전기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전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전기 안전관리와 관련하여 다른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는 내용은 「전기안전관리규정」및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지침서를 따른다.

제23조(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모든 근로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 및 방호 장치·보호구(이하 “유해·위험기계등”이라 한다) 중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위해

(危害)를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인증대상기계등” 이라 한다. [별표 5])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안전인증이 전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안전인증기준에 맞지 아니 하게 된 경우
3. 안전인증이 취소되거나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24조(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의 사용) 모든 근로자는 안전인증대상기계등이 아닌 유해·위험기계등으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 이라 한다. [별표 6])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수입·양도·대여·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신고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자율안전확인대상기계등의 안전에 관한 성능이 자율안전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자율안전확인표시의 사용 금지 명령을 받은 경우

제25조(안전검사) ① 관리감독자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기계·기구·설비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이라 한다. [별표 7])을 사용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이 다른 법령에 따라 안전성에 관한 검사나 인증을 받은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17조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2.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제39조 제4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3. 「전기사업법」제65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4. 「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제1항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안전검사 주기에 해당하는 시기의 검사로 한정한다) <개정 2023.01.04.>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25조 제1항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개정 2023.01.04.>
6. 「위험물안전관리법」제18조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7. 「화학물질관리법」제24조 제3항 본문에 따른 정기검사를 받은 경우
8. 기타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경우

③ 관리감독자는 제1항에 따라 안전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받은 경우 그 증명서를 안전검사대상기계등에 부착하여야 한다.

제26조(안전검사의 주기)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검사 주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크레인(이동식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

-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로부터 6개월마다)
- 2. 이동식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 : 「자동차관리법」제8조에 따른 신규 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
- 3. 프레스, 전단기, 압력용기, 국소배기장치, 원심기, 롤러기, 사출성형기, 컨베이어 및 산업용 로봇 :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마다)

제27조(안전검사대상기계등의 사용 금지) 관리감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검사대상기계등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제25조 제2항에 따라 안전검사가 면제되는 경우는 제외)
2.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안전검사대상기계등

제28조(표준작업안전수칙 작성 및 준수) ① 관리감독자는 설비별·작업별·공정별로 표준작업 안전수칙을 작성하여 근로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하고 해당 작업 근로자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표준작업안전수칙에 따라 작업하는 등 해당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다음의 경우 해당 표준작업안전수칙을 개정하여야 한다.

1. 기계·설비를 신규로 도입하거나 설치하는 경우
2. 화학물질을 신규로 사용하는 경우
3. 작업공정이나 작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
4. 사고 발생 등으로 작업수칙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④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해당 이주 근로자의 모국어로 번역된 표준작업안전수칙을 부착한다.

제29조(위험물질의 보관 및 사용)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규칙」[별표 1]의 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작업장에 해당 관리감독자를 위험물 취급 책임자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② 위험물질 취급 담당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최소량만을 두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험물질 취급 담당 관리감독자는 위험물질 보관 장소에는 화기물질의 휴대 및 관계 근로자 외의 사람을 출입 금지시키고, 이를 위해 해당 장소에 출입금지표지를 부착하고 해당물질의 위험성을 게시하는 등 근로자에게 위험장소임을 알려야 한다.

제30조(법령 요지 등의 게시) 안전관리자는 법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31(안전보건표지의 설치·부착) ① 회사는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시설·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안내 또는 그 밖에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의식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등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이하 “안전보건표지”라 한다)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표지의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관계법령을 따른다.

제32조(안전보건점검 및 순찰)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등 안전사고 및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보건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08.03.>

② 안전점검내용은「안전보건규칙」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근거로 실시한다.

③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주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자체 점검을 실시한다.

제33조(위험작업 관리) ① 관리감독자는 열원시설, 열수송시설, 열사용시설, 배전시설 및 일 반위험작업, 화기작업, 전기(정전)작업, 밀폐공간작업, 고소작업, 굴착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방사선사용작업 등의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2인 이상의 작업조(2인1조)를 편성하여 작업하여야 한다.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순노무[한국표준직업분류(통계청 고시 제 2017-191호, 2017.07.03.)의 대분류 9. 단순노무 종사자 참조] 외 제1항의 위험작업 및 일반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의 위험작업에 대한 세부 운영기준은 별도의 “위험작업에 관한 운영기준”을 따른다.

④ 제1항의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과 6개월 미만 근로자의 단독작업 금지가 작업 현장에서 이행되도록 수시로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위반사실이 확인될 경우 즉시 작업 중지를 명령하고 재발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는 위험작업 시행 전에 작업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제거 또는 완화 조치를 하여야 하며 작업위험성평가 자료는 작업 전 안전회의 시 근로자들에게 교육하여야 한다.

제34조(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및 이행) ① 열원 내 (가압장 포함)에서 제 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는 안전관리자 및 운영부서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작업허가서를 작성,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열원밖의 작업(신규 건설공사 · 열수송 · 배전 · 열사용시설)의 위험작업인 경우 계약상대자의 관리감독자는 안전작업허가서를 제출하고, 우리회사 해당부서 관리감독자는 해당내용을 확인하여 승인하여야 하며, 승인하는 과정에서 안전관의 협조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지침서를 따른다.

② 제1항에 해당하는 안전작업허가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위험작업 허가
2. 화기작업 허가
3. 전기(정전)작업 허가
4. 밀폐공간작업 허가
5. 고소작업 허가
6. 정비·보수작업 허가
7. 중장비 및 중량물 취급작업 허가
8. 방사선 사용작업 허가

③ 제2항의 각 호에 대한 이행사항은 안전보건경영 매뉴얼의 지침서를 따른다.

④ 위험작업을 담당하는 관리감독자는 전기작업, 중량물의 취급작업 등「안전보건규칙」제38조에 해당하는 작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안전보건규칙」[별표4]의 사항을 포함한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안전작업허가서 승인 요청시 첨부하여야 하며,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 하여야 한다.

제35조(안전보건진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추락·붕괴, 화재·폭발, 유해하거나 위험한 물질의 누출 등 산업재해 발생의 위험이 현저히 높은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진단 명령을 받은 경우 안전보건진단기관으로부터 안전보건진단을 받아야한다. 이 경우 근로자대표가 요구할 때에는 안전보건진단에 근로자대표를 참여시켜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보건컨설팅 업체를 활용하여 자체 안전보건진단을 할 수 있다.

③ 안전보건진단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안전보건진단기관의 결과에 따라 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 (소방안전관리)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제5조(소방안전관리자의 선임)에 따라 선임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선임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에 선임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소방안전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소방안전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피난계획에 관한 사항과 소방계획서의 작성 및 시행

2. 자위소방대 및 초기대응체계의 구성·운영·교육
 3.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관리
 4. 소방훈련 및 교육
 5. 소방시설이나 그 밖의 소방 관련 시설의 유지·관리
 6. 화기 취급의 감독
 7. 그 밖에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업무
- ③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계획서를 매년 수립하여야 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4조(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방계획서 작성 등)에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④ 소방안전관리자는 소방시설의 자체점검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하여야 한다.
1. 외관점검 : 매월 1회 이상
 2. 작동기능점검 : 연 1회 이상
 3. 종합정밀점검 : 연 1회 이상
- ⑤ 제4항의 각 호에 대한 세부사항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8조(소방시설등 자체점검의 구분 및 대상)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 ⑥ 소방안전관리자는 제4항에 따른 소방시설점검 결과를 2년간 자체 보관하고, 작동기능 점검 및 종합정밀점검 결과는 점검한 날로부터 7일 이내 관할 소방관서에 제출한다.

- 제37 (자위소방대)**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화재가 발생하는 경우에 화재를 초기에 진압하고 인명 및 재산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위소방대를 편성·운영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자위소방대는 해당 사업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원으로 구성하고, 대장·부대장 각 1명과 지휘반·진압반·구조구급반 및 대피유도반을 둔다.
- ③ 자위소방대의 대장·부대장과 각 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장은 자위소방대를 총괄·지휘·운용한다.
 2. 부대장은 대장을 보좌하고, 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임무를 대행한다.
 3. 지휘반은 대장의 지휘를 받아 다른 반의 임무를 조정하고, 화재진압 등에 관한 훈련계획을 수립·시행한다.
 4. 진압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화재를 진압한다.
 5. 구조구급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인명을 구조하고 부상자를 응급처치한다.
 6. 대피유도반은 대장과 지휘반의 지휘를 받아 근무자 등을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도록 유도한다.
- ④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하며, 소화·화재통보·피난 등의 요령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8(비상조치계획)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위험성평가 등에서 도출된 중대재해, 화재폭발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사고발생 가능성에 대한 대비 및 대응을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비상사태별 시나리오와 대책을 포함한 비상조치계획을 별도로 작성하여야 한다.

제39(피난 및 대응훈련)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나리오별로 정기적인 교육을 포함한 피난 및 대응훈련을 실시하고 대응훈련 후 성과를 평가하여 필요에 따라 개정·보완하여야 한다.

② 피난 및 대응훈련 주기는 시나리오별로 비상조치계획에 포함한다.

제40 (비상연락시스템 구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비상사태 시 사용할 수 있는 비상연락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최신의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② 비상연락체계는 공사 내부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관련 기관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제41 (안전보건제안제도) ① 회사는 전 임·직원이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방안을 연구하고 개선조치에 관한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는 안전보건제안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회사는 임·직원이 수시로 필요한 안전보건제안을 할 수 있도록 계몽, 독려, 유도해야 한다.

③ 회사는 제안된 사항에 대하여 시정 등 필요한 조치와 포상 할 수 있다

제42 (작업중지) ①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 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그 밖에 부서의 장 (이하 “관리감독자등”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관리감독자등은 제3항에 따른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제 2항에 따라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3(휴식 등) 회사는 고열·한랭·다습 작업을 하거나 폭염, 한파에 직접 노출되는 옥외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 적절하게 휴식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3 의2(단독작업 제한) ①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1. 밀폐공간 내 작업
2. 항만 시설물 등에 대한 정기 점검
3. 작업 높이가 1.2미터 이상인 사다리 작업
4.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5. 전기·기계설비 유지·보수 및 점검
6. 기타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작업

② 근속기간이 6개월 미만의 직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을 단독으로 수행할 수 없다.

1. 건설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2. 항만하역현장에서 수행하는 작업

제6장 보건관리

제44 (근로자건강진단) 회사는 정기적으로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진단의 명을 받은 근로자는 이를 거부해서는 안 된다.

① 건강진단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건강진단
2. 특수건강진단
3. 배치전건강진단
4. 수시건강진단
5. 임시건강진단

② 보건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특수건강진단”이라 한다)을 [별표 11]의 주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1. 시행규칙 [별표 22]의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업무에(이하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라 한다)에 종사하는 근로자
2. 제1호, 제5항에 따른 건강진단 실시 결과 직업병 소견이 있는 근로자로 판정받아 작업 전환을 하거나 작업 장소를 변경하여 해당 판정의 원인이 된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유해인자에 대한 건강진단이 필요하다는「의료법」제 2조에 따른 의사의 소견이 있는 근로자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측정 결과 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다음 회에 한정하여 관련 유해인자별로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2분의 1로 단축하여야 한다.

1. 작업환경을 측정한 결과 노출기준 이상인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
2.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견된 작업공정에서 해당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모든 근로자(다만,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로부터 특수건강진단 주기를 단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는 자문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해당 유해인자에 대하여 특수건강진단 실시 주기를 단축하여야 한다는 의사의 판정을 받은 근로자

④ 보건관리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의 배치 예정 업무에 대한 적합성 평가를 위하여 건강진단(이하 “배치전건강진단”이라 한다)을 해당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⑤ 보건관리자는 특수건강진단대상업무에 따른 유해인자로 인한 것이라고 의심되는 건강장애 증상을 보이거나 의학적 소견이 있는 근로자 중「시행규칙」제205조에 해당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이하 “수시건강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⑥ 신입 근로자 배치 전 건강진단은 본사 보건관리자가 시행 후, 그 결과를 보관한다.

제45 (건강진단의 실시시기) 회사는 1년에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46 (진단결과의 조치) ① 진단기관으로부터 30일 이내에 건강진단 개인표를 교부 받아 직 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진단 결과 이상이 있을 때에는 의사의 관리 소견에 따라 당해 근로자의 작업 전환, 취업금지, 근로시간의 단축 및 근무 중 치료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상기 1, 2항에 명시된 건강진단 개인표, 건강진단 결과표, 건강진단을 증명하는 서류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47 (질병자 근로 금지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해야 한다.

1. 전염될 우려가 있는 질병에 걸린 사람. 다만, 전염을 예방하기위한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2. 조현병, 마비성 치매에 걸린 사람
3. 심장, 신장, 폐등의 질환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질병으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질병에

걸린 사람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근로를 금지하거나 근로를 재개하도록 하는 때에는 미리 보건관리 대행기관의 담당자, 산업보건의 또는 건강진단을 실시한 의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건강진단 결과 유해 물질에 중독된 자는 당해 업무로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해선 안 된다.

제48 (보호구착용 작업 등) ①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착용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감전되거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모
 - 2.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 안전대
 - 3. 물체의 낙하·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帶電)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화
 - 4.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5. 용접시 불꽃 또는 물체가 날아 흩어질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6.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장갑
 - 7.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8. 유기용제 및 분진 취급 작업 : 방독마스크,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
 - 9. 밀폐공간에서의 작업 : 송기마스크
 - 10. 소음작업, 강렬한 소음작업 또는 충격소음 작업 : 귀마개, 귀덮개 등 청력보호구
 - 11. 진동작업 : 방진장갑 등 진동보호구
 - 12. 기타 해당 관리감독자가 보호구의 착용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작업에 대한 적정 보호구
- ② 보호구의 지급 기준은 과거의 소모 실적과 작업의 강도를 고려하여 지급 주기를 정하고 부서별로 작업 인원수 이상의 수량을 구매하여 확보토록 하되, 보호구는 반드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인증을 받은 것을 구매하여 착용토록 하여야 한다.
- ③ 모든 근로자는 해당 작업에 따라 지급된 적합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지정된 목적 이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
- ④ 보호구를 지급한 때에는 별표4의 보호구 지급주기에 따라 지급하고 보호구의 명칭, 지급일자, 안전인증번호, 보호구 수량, 지급자명, 수령자명 등을 기록한 보호구 지급대장을 작성하여 해당 부서별로 비치하고 해당 부서장의 책임 하에 관리토록 하여야 한다.
- ⑤ 해당 부서의 장은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보호구를 상시 점검하고 이상이 있는 것에 대하여 보수하게 하거나, 다른 것으로 교환해 주어야 한다.
- ⑥ 지급된 개인 보호구는 질병감염 우려가 없도록 다수의 근로자가 공동으로 사용케 해서는 안 되며, 개인 보호구함을 설치하는 등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⑦ 지급된 보호구는 해당 부서장의 허가 없이는 분해, 변경, 개조해서는 아니 된다.

제49(작업환경측정) ①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제42조에 의거 별표8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측정주기마다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작업환경 측정 기관에 의뢰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토록 하여야 한다.

② 작업환경측정은 작업환경 측정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하되 근로자 대표 요구시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입회시켜야 한다.

③ 근골격계 질환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가 부과(산업보건 기준에 관한규칙 개정안)됨에 따라 유해인자조사 및 의학적 관리·교육을 실시한다.

제50 (건강장애 발생 등에 대한 조치)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2. 「근로기준법」제54조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의 연장
3.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애 관련 치료 및 상담 지원
4.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증거서류를 제출하는 등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고객응대 근로자 등이 같은 항에 따른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지원

제51 (재해 발생시 처리 절차) ①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작업의 관리감독자와 목격자는 신속히 안전 및 보건업무담당자에게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하고,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재해발생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하고, 회사 지정 병원에 연락하는 등 사고 처리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2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 ① 회사는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는 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한 자료(이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명
2.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 주의 사항
4.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5. 물리·화학적 특성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할 수 있는 명칭 및 함유량으로 적을 수 있다.

③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쉽게 보거나 접근할 수 있는 장소에 각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거나,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가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전산장비를 갖추어 두어야 한다.

④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할 경우 관련 산업안전보건법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이를 담은 용기 및 포장에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 및 포장에 담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바에 따라 경고표시 기재 항목을 적은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회사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담은 용기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경고표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용기에 이미 경고표시가 되어 있는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회사는 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기재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생긴 때에는 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반영하여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받거나 제공받은 자에게 신속하게 제공하여야 한다.

⑦ 회사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취급하는 작업공정별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 요령을 게시하여야 하고, 이 관리 요령은 유해성·위험성이 유사한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의 그룹별로 작성하여 게시할 수 있다.

1. 제품명
2.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 물리적 위험성
3. 안전 및 보건상의 취급주의 사항
4. 적절한 보호구
5. 응급조치 요령 및 사고 시 대처방법

제7장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제53 (긴급조치) 직원이 재해를 당하였을 때에는 동료 직원 등 관계자는 즉시 재해자를 재해 정도에 따라 인근 지정 병원 또는 종합병원으로 후송 및 현장에서 인공호흡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4 (비상연락망) 회사는 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동성을 발휘하여 사고에 대한 인명 및 재산의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제55 (사고조사 및 보고) ① 재해 발생 현장은 사고 지점 상태에서 원상태로 보존하며 안전·보건업무 담당자 지시 없이 훼손해서는 아니 된다.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하거나 요양급여 또는 유족급여를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여 그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전화·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 발생 개요 및 피해 상황
2. 조치 및 전망
3. 그 밖의 중요한 사항

④ 안전관리자(안전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 및 보건관리자(보건관리전문기관의 사업장 담당자)는 사고 현장에 출두하여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수립하여 해당 작업자 및 관리감독자에게 지도하여야 한다.

⑤ 재해자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속한 재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 안전업무담당자(직업병 발생 시는 보건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고 보고서와 재해분석에 따른 통계를 작성하여 3년간 보존하거나, 산업재해조사표 사본 또는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1.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2.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3.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4. 재해 재발방지 계획

⑦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중대재해 원인조사를 하는 때에는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해야 하며 재해조사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서류 및 목격자의 진술 등을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 경우 중대재해 발생의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한 것인지 등을 조사해야 한다.

제56 (재해분석) ①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근로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②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전년도에 발생한 재해의 원인 및 부서 또는 작업을 총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 ③ 재해분석 결과는 각 부서에 통보하고, 게시판에 공고하여 전 직원 및 각 부서의 협조를 구하도록 한다.

제7장의2 위험성평가에 관한 사항

제57 (위험성평가) ① 회사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험성 평가의 목적, 평가방법, 담당자 역할, 책임자 역할, 평가 대상별 역할, 주지방법, 유의사항 등에 관한 연간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② 회사는 위험성평가 담당자 또는 관계자 등에게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외부교육기관의 강좌를 수강하게 하거나 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성평가에 관한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③ 위험성평가 실행 결과 남아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해 기록을 유지하며, 위험성평가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평가대상선정 등 사전준비
2. 근로자의 작업내용과 관련된 유해 위험요인 파악
3.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지 결정
4.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6. 위험성평가 실시내용 및 결과에 대한 공유·기록·보관

⑤ 위험성 평가대상선정은 근로자(협력업체, 방문객 포함)에게 안전·보건상 영향을 주는 다음 사항 등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1. 회사 내부 또는 외부에서 작업장에 제공되는 모든 기계·기구 및 설비
2. 작업장에서 보유 또는 취급하고 있는 모든 유해물질
3. 일상적인 작업(협력업체 포함) 및 비일상적인 작업(수리 또는 정비 등)
4. 발생할 수 있는 비상조치 작업

⑥ 위험성평가 주기는 최초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로 구분한다. 이 경우 최초평가 및 정기평가는 전체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⑦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계획 착수 전에 실시한다. 다만, 제5호의 경우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평가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산업재해가 발생한 때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⑧ 정기평가는 최초평가 후 (사업장 전반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다음을 고려하여 실시한다.
1. 기계·기구, 설비 등의 기간 경과에 의한 성능 저하
 2. 근로자의 교체 등에 수반하는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지식 또는 경험의 변화
 3. 안전·보건과 관련되는 새로운 지식의 습득
 4. 현재 수립되어 있는 위험성 감소대책의 유효성 등
- ⑨ 위험성 평가 실시방법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위험성평가 실시를 총괄 관리한다.
 2. 위험성평가 전담직원을 지정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위한 체제를 구축한다.
 3. 작업내용 등을 상세하게 파악하고 있는 관리감독자가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개선조치를 실행한다.
 4.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거나 감소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를 참여하게 한다.
 5. 기계·기구, 설비 등과 관련된 위험성평가에는 해당 기계·기구, 설비 등에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한다.
 6.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필요한 회의 및 교육등을 실시한다.
- ⑩ 회사는 위험성평가 수행내용 및 결과에 대하여 문서화하여 유지하여야 한다.
1. 위험성평가를 위해 사전조사 한 안전보건정보
 2. 평가대상 공정의 명칭 또는 구체적인 작업 내용
 3. 유해, 위험요인의 파악
 4. 위험성 추정 및 결정
 5. 위험성 감소대책 및 실행
 6. 위험성 감소대책의 실행계획 및 일정 등
 7. 그 밖에 사업장에서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 ⑪ 위험성평가에 관한 문서는 최소 3년 이상 보존토록 하고, 최초평가 기록은 영구보존한다.

제8장 보칙

제58 (규정의 제정 및 개정 등) 회사는 이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제11조에 따른 안전보건노사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안전보건 노사협의회가 설치

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59(포상) 회사는 안전보건관리 실적이 우수하거나 산업재해 예방 등에 크게 기여한 근로자에 대하여 회사 규정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 (서류의 보존)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제2호의 경우 2년을 말한다.)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의 선임에 관한 서류
2.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보존한 서류
3.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류
4.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한 서류
5.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에 관한 서류
6.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서류
7. 건강진단에 관한 서류

제61 (안전보건경영시스템) ① 회사는 자율적인 안전보건경영체제 구축을 통한 안전보건 활동의 지속적인 개선을 위하여 국내·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을 받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절차서, 지침서,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회사가 별도로 정할 수 있다.

부칙 <202305.02.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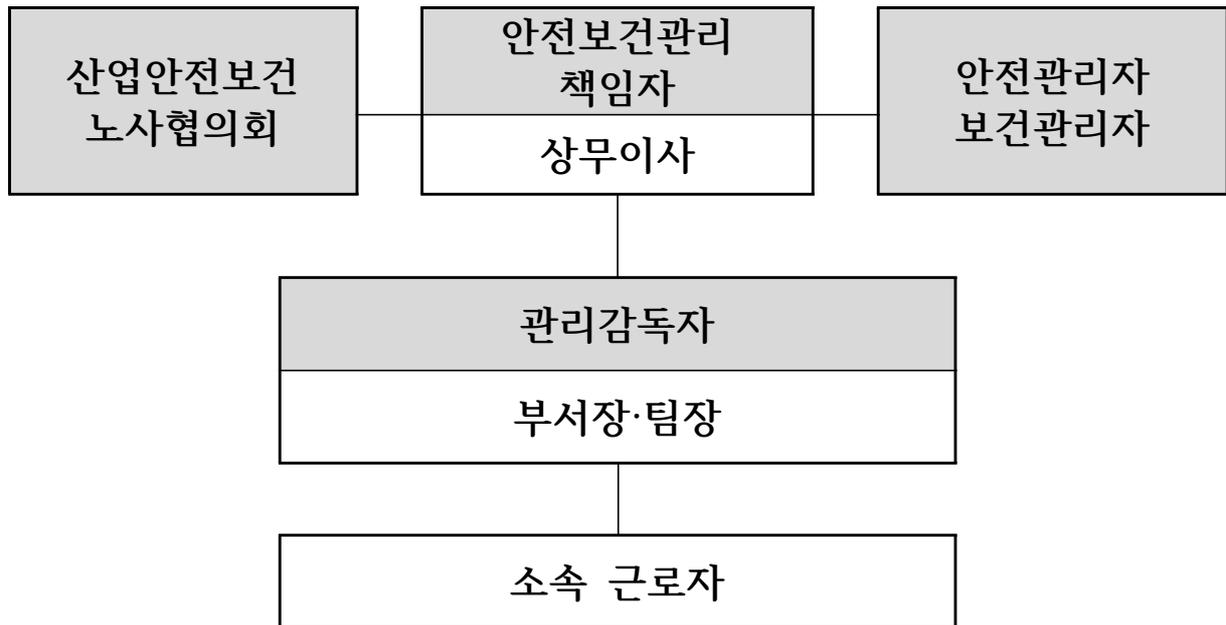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05월 0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규정 제정 후 시행일 전까지 회사가 실시한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행위는 이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별표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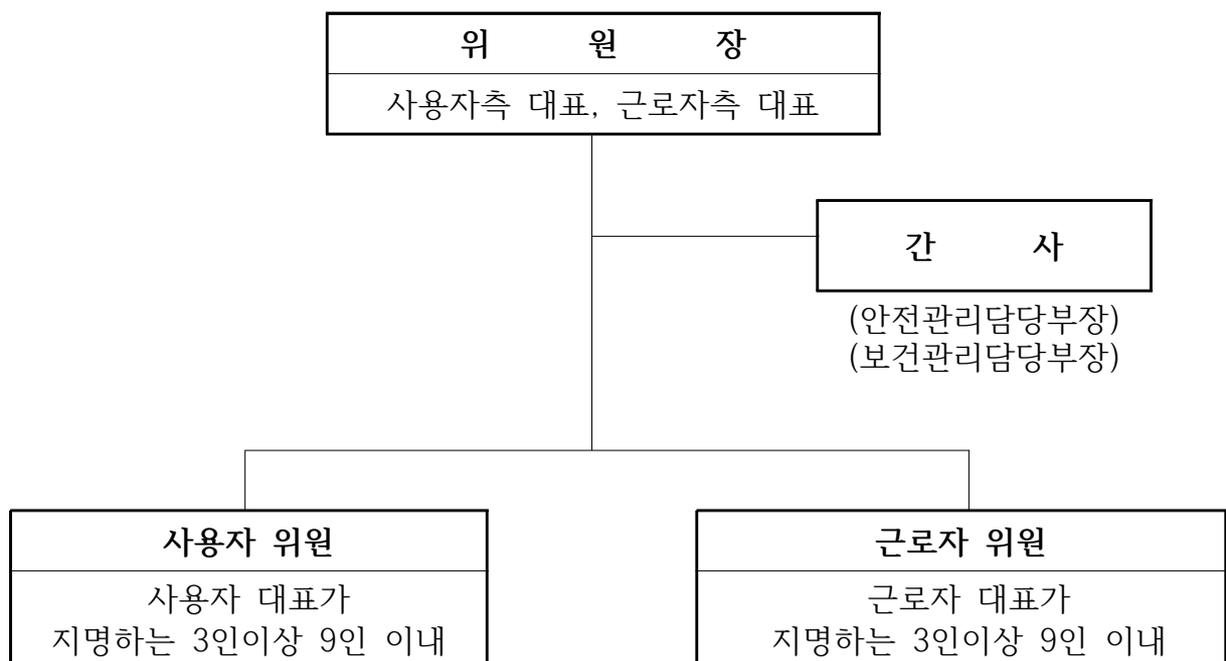
안전보건관리 조직도

1. 안전보건관리 체제



【별표 2】 (제11조2 관련)

안전보건노사협의회



【별표 3】 (제12조, 제13조, 제13조의1 관련)

산업안전·보건 관련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및 교육 내용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종사 근로자	매분기 3 시간 이상
	사무직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 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 시간 이상
나. 신규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 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 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 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시행규칙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의 (제 40 호는 제외한다)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 시간 이상
	시행규칙 별표 5 제 1 호 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 분할하여 실시 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 단기간 작업 : 2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1회성 작업

간헐적 작업 :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제27조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교육기한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신규	6 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6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년 이내
나. 안전관리자	신규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24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년 이내
다. 보건관리자	신규	34 시간 이상	선임 후 3개월 이내
	보수	24 시간 이상	신규 및 보수 교육 후 2년 이내

3.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대 상	교육내용
가. 근로자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안전 및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나.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작업공정의 유해·위험과 재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 표준안전작업방법 및 지도 요령에 관한 사항 ◦ 관리감독자의 역할과 임무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재보상보험제도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에 관한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장근로자와의 의사소통능력 향상, 강의능력 향상, 기타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등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 능력 배양 내용은 전체 관리감독자 교육시간의 1/3 이하에서 할 수 있다.)
다.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안전보건법」 및 일반관리에 관한 사항
라.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통내용 : 채용 시의 교육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내용 ◦ 개별내용 : 시행규칙 별표 7 제 1 호 라목 각 호의 내용

【별표 4】 (제21조 관련)

유해·위험 방지를 위하여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조치

기계·기구	유해·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
1. 예초기	날접촉 예방장치
2. 원심기	회전체 접촉 예방장치
3. 공기압축기	압력방출장치
4. 금속절단기	날접촉 예방장치
5. 지게차	헤드가드, 백레스트, 전조등, 후미등, 안전벨트
6. 포장기계(진공포장기, 랩핑기)	구동부 방호 연동장치

동력으로 작동하는 기계·기구에 설치하여야 할 방호조치

기계·기구	방호조치
1. 작동 부분에 돌기 부분이 있는 것	작동부분의 돌기부분은 문힘형으로 하거나 덮개를 부착할 것
2. 동력전달 부분 또는 속도조절 부분이 있는 것	동력전달부분 및 속도조절부분에는 덮개를 설치하거나 방호망을 설치할 것
3. 회전기계에 물체 등이 말려 들어갈 부분이 있는 것	회전기계의 물림점(롤러, 기어 등)에는 덮개 또는 울을 설치할 것

【별표 5】 (제23조 관련)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

구 분	대 상
1. 기계 및 설비	가. 프레스 나. 전단기 및 절곡기 다. 크레인 라. 리프트 마. 압력용기 바. 롤러기 사. 사출성형기 아. 고소작업대 자. 곤돌라
2. 방호조치	가. 프레스 및 전단기 방호장치 나. 양중기용 과부하장치 다. 보일러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라.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안전밸브 마. 압력용기 압력방출용 파열판 바.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구 사.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및 부품 아.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기 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자. 충돌·협착 등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산업용 로봇 방호장 치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가. 추락 및 감전 위험방지용 안전모 나. 안전화 다. 안전장갑 마. 방진마스크 바. 방독마스크 사. 송기마스크 아. 전동식 호흡보호구 자. 보호복 차. 안전대 카. 차광 및 비산물 위험방지용 보안경 타. 용접용 보안면 파. 방음용 귀마개 또는 귀덮개

【별표 6】 (제24조 관련)

자율안전확인대상 기계·기구등

구 분	대 상
1. 기계 및 설비	가. 연삭기 또는 연마기(휴대형은 제외한다) 나. 산업용 로봇 다. 혼합기 라. 파쇄기 또는 분쇄기 마. 식품가공용기계(파쇄·절단·환합·제면기만 해당한다) 바. 컨베이어 사. 자동차정비용 리프트 아. 공작기계(선반, 드릴기, 평삭·형삭기, 밀링만 해당한다) 자. 고정형 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대패, 루타기, 띠톱, 모떼기 기계만 해당한다) 차. 인쇄기
2. 방호조치	가. 아세틸렌 용접장치용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용 안전기 나. 교류 아크용접기용 자동전격방지기 다. 롤러기 급정지장치 라. 연삭기 덮개 마. 목재가공용 둥근톱 반발 예방장치와 날 접촉 예방장치 바. 동력식 수동대패용 칼날 접촉 방지장치 사. 추락·낙하 및 붕괴 등의 위험방지 및 보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3. 보호구	가. 안전모 나. 보안경 다. 보안면

【별표 7】 (제25조 관련)

안전검사 대상 유해·위험기계등

1. 프레스
2. 전단기
3. 크레인(정격 하중이 2톤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4. 리프트
5. 압력용기
6. 곤돌라
7. 국소배기장치(이동식은 제외한다)
8. 원심기(산업용만 해당한다)
9. 롤러기(밀폐형 구조는 제외한다)
10. 사출성형기[형 체결력 294킬로 뉴턴(KN) 미만은 제외 한다]
11. 고소작업대[「자동차관리법」제3조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또는 특수자동차에 탑재한 고소작업대로 한정한다]
12. 컨베이어
13. 산업용 로봇

* 비고 :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대상 기계등의 세부적인 종류, 규격 및 형식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8】 (제52 관련)

허가대상 물질

1. α -나프틸아민[134-32-7] 및 그 염(α -naphthylamine and its salts)
2. 디아니시딘[119-90-4] 및 그 염(Dianisidine and its salts)
3. 디클로로벤지딘[91-94-1] 및 그 염 (Dichlorobenzidine and its salts)
4. 베릴륨(Beryllium; 7440-41-7)
5. 벤조트리클로라이드(Benzotrichloride; 98-07-7)
6. 비소[7440-38-2] 및 그 무기화합물(Arsenic and its inorganic compounds)
7. 염화비닐(Vinyl chloride; 75-01-4)
8. 콜타르피치[65996-93-2] 휘발물(Coal tar pitch volatiles)
9. 크롬광 가공(열을 가하여 소성 처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Chromite ore processing)
10. 크롬산 아연(Zinc chromates; 13530-65-9 등)
11. *o*-톨리딘[119-93-7] 및 그 염(*o*-Tolidine and its salts)
12. 황화니켈류(Nickel sulfides; 12035-72-2, 16812-54-7)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제5호는 제외한다)을 함유한 혼합물
(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4. 제5호의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퍼센트 이하인 것은 제외한다)
15. 그 밖에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는 유해물질

【별표 9 (제44 관련)

특수건강진단의 시기 및 주기

구 분	대상 유해인자	시기	주기
		배치 후 첫 번째 특수 건강진단	
1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디메틸포름아미드	1개월 이내	6개월
2	벤젠	2개월 이내	6개월
3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사염화탄소 아크릴로니트릴 염화비닐	3개월 이내	6개월
4	석면, 먼 분진	12개월 이내	12개월
5	광물성 분진 목재 분진 소음 및 충격소음	12개월 이내	24개월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대상 유해인자를 제외한 시행규칙 별표33의 모든 대상 유해인자	6개월 이내	12개월